

제 65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뉴욕시 학생 수송 관련 조례의 일시 정지 및 수정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유치원에서부터 8학년까지의 18,000명 학생들이 자신의 정규 학교 장소로부터 다른 학교 건물로 재배치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스쿨버스의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이 학생들이 등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 교통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B조의 29-a항에 의거 해당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명령이 발행된 일자로부터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 및 수정합니다:

교육법 제3623조 및 여기에 의거 공포된 규제, 그러한 스쿨버스 요건이 뉴욕시 학생, 학생의 자녀, 교사 및 기타 감독 자격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학교 또는 학교 활동으로 또는 그로부터 수송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운용되는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한도까지;

교육법 제3624조 및 차량교통법 제501조와 여기에 의거 공포된 규제, 뉴욕시 학생, 학생의 자녀, 교사 및 기타 감독 자격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학교 또는 학교 활동으로 또는 그로부터 수송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운용되는 자동차가 이러한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을 충족하지 않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이 있는 운전자에 의해 운전될 수 있는 한도까지;

교통법 제140조 및 차량교통법 제375 및 383조와 여기에 의거 공포된 규제, 스쿨버스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뉴욕시 학생, 학생의 자녀, 교사 및 기타 감독 자격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학교 또는

학교 활동으로 또는 그로부터 수송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운용되는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한도까지.

2012년 11월 7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